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10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10. 15

다. 상 정 일 자 : 2007. 10. 29 (제15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 제안설명 요지(교통행정과장 김종하)

가. 제안사유

「주차장법」 제4조에 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법령의 조례위임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수급실태조사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 중에서 3개 구역 이내로 지역여건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 제2조의2 신설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관리자 선정순서 중 기타의 경우에 납부 방법을 1년 단위로 선납하고, 분납시 연4회 이내에 연6%의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게 함 ▷ 제6조제2항 표의 3.
-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전일제, 주간제(08:00~20:00), 야간제(20:00~익일08:00)로 운영 ▷ 제13조제3항.
- 주거지전용주차장 등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동장이 추천하는 국민운동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정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함 ▷ 제13조제5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4조, 동법시행규칙
- 나. 예산 및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기간 : 2007. 9. 7~2007. 9. 27

4. 전문위원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 건은

- 차량의 증가추세와 열악한 주차환경으로 불법주차행위가 성행, 주민들의 불편 가중과 교통 두절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현 실태를 해소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 주차환경지구의 지정,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시간제 운영,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분납제 실시 등 일련의 주요개선 쟁점사항은 행정의 능률성확보와 효과성 유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또한 중구, 서구를 비롯하여 동구, 남구, 동래구 등 5개구에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여타 구·군에서도 제·개정 준비 중에 있으며
-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련 위임근거와 주차장설치에 따른 사후관리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 조례 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